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장 용 대

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0년 11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1월 1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2011년 1월 1일부터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일부 감면대상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규정되므로
-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고, 감면하지 않은 감면대상을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며,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감면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현행 도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대상 중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서 규정하지 않은 감면대상을 도세감면조례에 존치하고자 함(감면대상 20건)
-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1년 연장 :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4. 검토의견

이번에 전부개정하는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중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대상을 도세감면조례로 존치하고, 감면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

주요내용으로는

-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 취득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
- 안 제3조에서는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며
- 안 제4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
- 안 제5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명시하며
- 안 제6조에서는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서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에서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는 상업 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
- 안 제8조에서는 지역특산물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고

-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지식산업센터등에 대한 감면과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을
-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과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을 규정하고
-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7조와 제18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,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을
-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,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
- 안 제21조에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였음.

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도세감면조례 중 2011. 1. 1부터 시행되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된 감면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규정을 도세감면조례로 존치하면서, 감면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감면대상 및 감면범위에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